

2026학년도 2학기 4차

사회복지현장실습(120/160시간 대상자) 모집안내

1 모집내용

구분	내용
수업기간	2026.09.02(수) ~ 2026.12.15(화) (15주)
모집기간	2026.07.24(금) ~ 2026.08.28(금) (선착순 마감)
실습기간	2026.09.07(월) ~ 2026.11.22.(일) (기간 변동 불가 / 기간 외 실습 불가) ※ 세미나 출석수업일과 실습일은 중복 불가 (참고 : p.4 출석수업 일정)
실습지역	대전, 세종, 충남(당진, 서산, 태안 제외), 충북(단양, 제천, 충주 제외), 경남, 전남
접수방법	-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 후 안내 받은 서류 제출 링크를 통해 모바일로 서류 제출 : ~08/28(금)까지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수강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제출서류 및 기입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등록이 허가된 후에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수강료	- 납부금액 : 400,000원 (현장실습비 미포함) ※ 단, 실습 연계기관 분반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45만원으로 결제 ※ 현장실습비 : 실습생이 실습기관으로 별도 부담 (교육원은 관여하지 않음) - 납부방법 : 제출서류 검토 후 결제링크 카카오톡 발송 (카드결제 or 가상계좌 입금) ※ 결제는 개강일 전날까지 완료해야 함

2

신청자격

- **세미나 출석수업(총 3회) 참석 가능자** (1회라도 결석 시 과목 미이수)
 - ※ 구법 대상자(2020년 이전 수강생)는 출석 세미나 없음
- 대전, 세종, 충남 전 지역(당진, 서산, 태안 제외), 충북 전 지역(단양, 제천, 충주 제외)
- 선이수과목 충족자 : 전공필수 4과목 이상 (* 권장 : 6과목 이상) + 전공선택 2과목 이상 이수자
 - ※ 수강중인 과목은 **수강증명서**로 대체 가능 (단, **개강일 전날까지 성적증명서 필수 제출**)

■ 개정전 (120시간 실습 대상자)

2010년 입학생 ~ 2020년 이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

구분	과목명	이수과목
전공필수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4과목 이상
전공선택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철학	2과목 이상

■ 개정후 (160시간 실습 대상자)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을 이수한 자

구분	과목명	이수과목
전공필수	사회복지학개론(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4과목 이상
전공선택	가족복지론, 가족상담및가족치료(가족상담및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인권,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의료사회사업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정신보건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학교사회복지론(학교사회사업론)	2과목 이상

3
제출서류

번호	제출서류	첨부파일	세부사항	제출처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원양식)	양식제공	■ 작성 후 본인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육원으로 제출	에듀사이버 평생교육원
②	실습신청서 (본원양식)	양식제공	■ 작성 후 본인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의 직인을 받아 교육원으로 제출 (※ 실습기관 등록번호 필수 기재)	
③	실습지도계획서 (본원양식)	양식제공	■ 실습기관 사전방문 시 실습지도자에게 작성 요청 후 교육원으로 제출	
④	실습세부일정표 (본원양식)	서버입력	■ 온라인 제출시 서버입력	
⑤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확인서 (실습기관 요청)	-	■ 실습기관 사전방문 시 실습기관에 요청하 여 교육원으로 제출 (※ 원본대조필 날인 후 사본 제출)	
⑥	전공필수 4과목+전공선택 2과목 선이수과목 성적증명서 (개별준비)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또는 교육기관 성적증명서 발급 ■ 수강중인 과목은 수강증명서로 대체 가 능 (단, 개강일 전날까지 성적증명서 필 수 제출)	
⑦	사회복지현장실습 협조의뢰 공문 (본원양식)	공문제공	-	실습기관
⑧	실습생 프로파일 (본원양식)	양식제공	■ 작성 후 본인서명 또는 날인하여 실습기 관으로 제출 (※ 반명함 사진 필수 첨부)	

[참고사항]

※ ①, ②, ③, ④, ⑧번은 첨부파일 [서식모음]의 본원양식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 ①, ②, ③번 서류는 원본으로 준비 후 온라인으로 제출 바랍니다.

※ **모든 서류 내 서명(날인)은 전자직인 사용이 불가합니다.**

※ **모든 서류 내 수정테이프 사용은 불가합니다.**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수강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제출서류 및 기입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등록이 허가된 후에도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4
신청절차

단계	절차	세부내용
1단계	온라인 수강신청	■ 에듀사이버평생교육원 홈페이지(new.edu007.kr)에서 세미나 일정 확인 후 희망분반 선택하여 수강신청 진행 ※ 신청분반 인원미달로 인한 폐강 시 타 분반으로 조정될 수 있음
2단계	모바일 서류 제출	■ 1단계(온라인 수강신청) 완료자에 한해 교육원에서 서류 제출 카카오톡 발송 ■ 서류준비 후 모바일 서류제출 : ~08.28(금)까지 인정 ①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② 실습신청서 ③ 실습지도계획서 ④ 세부일정표 ⑤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확인서 ⑥ 전이수과목 성적증명서 (전공필수 4과목+전공선택 2과목)
3단계	합격자 통보	■ 교육원에서 서류심사 후 합격자에 한해 수강료 납부 카카오톡 발송
4단계	수강료 납부	■ 납부금액 : 400,000원 (현장실습비 미포함) ※ 단, 실습 연계기관 분반으로 신청하는 경우, 45만원으로 결제 ※ 현장실습비 : 실습생이 실습기관으로 별도 부담 (교육원은 관여하지 않음) ■ 납부방법 : 제출서류 검토 후 결제링크 카카오톡 발송 (카드결제 or 가상계좌 입금) ※ 결제는 개강일 전날까지 완료해야 함
5단계	최종합격 안내	■ 교육원에서 납부된 수강료 확인 후 수강신청 최종합격 안내 카카오톡 발송

5
출석수업 일정

반	정원	세미나 출석수업(총 3회)				실습 가능지역
		오리엔테이션 (1주차)	중간평가 (8주차)	최종평가 (15주차)	시간	
1반	30명	26.09.05(토)	26.10.24(토)	26.12.12(토)	10:00~12:00	충북 (단양, 제천, 충주 제외)
2반	30명	26.09.05(토)	26.10.24(토)	26.12.12(토)		대전, 세종, 충남 (당진, 서산, 태안 제외)
3반	30명	26.09.05(토)	26.10.24(토)	26.12.12(토)	12:30~14:30	대전, 충북 (단양, 제천, 충주 제외)
4반	30명	26.09.05(토)	26.10.24(토)	26.12.12(토)		대전, 세종, 충남 (당진, 서산, 태안 제외)
5반	30명	26.09.05(토)	26.10.24(토)	26.12.12(토)	15:00~17:00	경남, 전남

※ 구법 대상자는 출석 세미나가 없으므로 일정 상관없이 실습 가능지역 확인 후 수강신청 바랍니다.

※ 학사일정은 교육원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추후 제공되 됩니다.

※ 신청분반 인원미달 시 폐강 또는 타 분반으로 조정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6
실습규정

실습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한 기관 중 실습생이 직접 실습기관 섭외 ■ 2명 이상의 실습지도자가 상근하고 있어야 함 ■ 재직중인 기관에서는 실습 진행 불가
실습기관 확인경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lic.welfare.net) 공지사항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확인서에 명시된 자 ■ 실습기관에 상근직원으로 있는 자 (기관장과 실습지도자가 동일할 경우, 상근임을 증명해야 함)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자 ■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 실습지도자 1명이 동시지도 할 수 있는 실습생은 5명 이내로 함 ■ 실습지도자와 실습지도교수 동일 불가
실습시간	■ 1일 최소 4시간 이상 ~ 최대 8시간 이하 (주 최대 40시간 이하) ■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에 따른 실습지도자의 법정근로시간 내 실시한 실습만 인정 ■ 지도자의 식사시간(점심: 통상 12시~13시, 저녁: 통상 18시~19시)은 실습시간으로 미인정 ■ 교육원에서 정한 실습기간 내 실시한 실습만 인정 (기간 변동 불가 / 기간 외 실습 불가) ※ 세미나 출석수업일과 실습일은 중복 불가
현장방문	■ 현장지도를 위해 실습기간 중 실습지도교수의 불시 방문이 있음 ※ 실습일정은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하나 현장방문의 경우 실습생이 실습을 진행하는 일자에 이루어지므로 실습기관의 특수한 사정(휴관, 외부행사 등)으로 일정변경이 있는 경우, 교육원에 변경사실을 필수 고지해야 함 (이에 따르지 않고 실습생이 부재할 경우, 허위(부정)실습으로 간주) ※ 현장방문 시 허위(부정)실습으로 의심될 경우, 실습기관과 실습지도자는 관계기관에 실습관리 부실운영기관으로 신고되며 실습생은 수강취소 후 본 교육원으로 재수강 불가 (허위실습으로 인한 수강취소는 환불 불가)
기 타	■ 현장실습비의 경우 실습기관 부과기준에 의거하여 납부가 필요한 경우, 실습생이 실습기관으로 별도 부담 (교육원은 현장실습비에 관여하지 않음)
[참고사항] ※ 실습규정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할 수 없으며 실습기관, 실습지도자, 실습시간 등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실습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온라인 원격수업은 진도율 80% 미만 시 과목 미이수 됩니다.
- 세미나 출석수업은 총 3회(각 2시간) 의무 참석이며 1회라도 결석 시 과목 미이수 됩니다.
 ※ 구법 대상자는 출석 세미나가 없습니다.
 ※ 학사일정은 교육원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추후 제공지 됩니다.
 ※ 신청분반 인원미달로 인한 폐강 시 타 분반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실습은 반드시 교육원에서 정한 실습기간 내에만 진행 가능합니다. (기간 변동 불가, 기간 외 실습 불가)
 ※ 세미나 출석수업일과 실습일은 중복될 수 없습니다.
- 모든 서류는 교육원에서 정한 기한 내 반드시 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수강중인 과목은 수강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나 개강일 전달까지는 반드시 성적증명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제출서류 중 1번, 2번, 3번 서류는 원본으로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4번, 5번, 6번 서류는 복사본으로 준비하여 제출 가능)
- 모든 서류 내 수정테이프 사용은 불가합니다. 또한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수강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제출서류 및 기입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등록이 허가된 후에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납부방법 : 모바일 서류제출 후 결제링크 발송 (카드결제 or 가상계좌 입금)
 ※ 수강료 납부 안내는 신청서류 검토 후 발송
 ※ 결제는 개강일 전달까지 완료해야 함
- 개강일 이후에는 학습비 전액환불이 불가합니다. 개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포기할 경우, 교육원으로 연락하여 실습담당자에게 환불의사를 밝히고 환불서류를 발송해주셔야 합니다. 학습비 반환기준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반환되오니 참고바랍니다.
 ※ 허위사실 및 허위실습으로 인한 수강취소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개강일 이후 선이수과목 미충족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전액 환불이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연락처, 주소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교육원으로 연락하여 실습담당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고지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실습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실습일정은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하나 실습기관의 특수한 사정(휴관, 외부행사 등)으로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교육원에 변경사실을 고지해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실습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홈페이지 내 게시되어 있는 실습관련 공지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고 숙지하지 않고 지원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실습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관련)

반환사유	반환사유 발생시점	반환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5/6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이상 경과	반환 불가

※ 현장실습비 반환은 교육원과 무관합니다.

※ 허위사실 및 허위실습으로 인한 수강취소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개강일 이후 선이수과목 미충족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전액 환불은 불가합니다.

※ 반환사유 발생시점은 환불관련 서류가 교육원에 도착한 날로부터 적용됩니다.